# 지배구조내부규범

2026. 3.

DB손해보험주식회사

# 지배구조내부규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지배구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內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 이란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 란 사내이사, 독립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①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이사회의 구성 등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독립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선임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의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6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회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며 세부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1.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차입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결과
2. 주요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이사의 자격요건 등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하며, 경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독립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와 제6조,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책임감 및 충실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이사의 선임과 해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명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지배구조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
⑤ 이사는 임기의 만료, 사임 의사의 표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독립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사에서 6년 이상 독립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합산하여 9년이상 독립이사로 재직한 자는 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⑥ 독립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등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자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통지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임독립이사는 균형 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회사는 이사회에 준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상법 415조의2 제3항)' 및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한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이사의 의결권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임원회를 두며, 경영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대표이사, 독립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임원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최고경영자(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규범에서 같다) 및 독립이사 후보군의 관리 및 후보 검증
4. 그 밖에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내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자회사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④ 감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배구조법 제22조에 관한 사항의 결의
2. 독립이사 지원조직 업무총괄자 및 선임계리사에 대한 성과평가 참여
3. 그 밖에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보수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보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9조(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내부통제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각각「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2(내부거래위원회)**

①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의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내부거래위원회는 대주주·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116 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서 정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4.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청
5. 그 밖에 내부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내부거래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0조(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점의 신설, 이전 및 폐쇄
2. 지배인의 선·해임
3. 거래은행과의 당좌 개설 및 연장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③ 경영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사회 및 위원회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결의 안건 이행 여부,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수행 적정성 등에 대해 연 1회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업무는 이사회 운영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지배구조법』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 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제1항 등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상근인 임원은 관련 법규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임원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경영활동에 참여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경영임원을 제외한다.)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임원 해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 만료
2. 의원 사직
3. 인사관계 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이사 총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임한다.

**제26조(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사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임원 및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정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회사에서 정한 외부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보수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반영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고정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하며, 보수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장 최고경영자

**제29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및 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개시사유, 개시시기, 평가기준, 승계절차 및 해임사유 등을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 반영한다.

**제30조(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배구조 및 인사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31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 선임의 소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최고경영자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및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임원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선임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경영이념에 대한 이해, 보험업에 대한 업무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공익성 및 회사가치의 증대를 통한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 등에 부합하는 자로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교육 결과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선정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의결하고, 후보자가 등기이사로 신규선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추천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정관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최고경영자 비상 경영승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련법령 및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제30조에 따른 지원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발굴·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 관리
4. 그 외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업무

②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현황을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36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등 주요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주요 경영진의 임기와 선임 및 해임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주요 경영진 등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동 법 시행 후 신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범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제8조 제2항의 개정은 정관변경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조항의 '독립이사'는 상법 시행 전까지 '사외이사'로 본다.